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12.12.10일자 입법예고)

(개정사유 생략)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업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항공기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 <u>안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u>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 <u>제10항, 제30조, 제31조(안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u>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u>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u> 나. <u>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u> 다. <u>금융 및 보험업</u> 라. <u>전문서비스업</u> 마. <u>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u> 바. <u>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u> 사. <u>사업지원 서비스업</u> 아. <u>사회복지 서비스업</u>	법 제31조(특별교육은 제외한다)

대상 사업(업종)	적용 제외 규정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 방송업 아. 정보서비스업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p>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p>
<p>5.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p>	<p>법 제2장, 제3장, 제31조</p>
<p>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p>법 제2장, 제3장, 제31조(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0조</p>

[별표 1의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업종)	규모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21. 농업 22. 어업 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5. 정보서비스업 26. 금융 및 보험업 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31.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 제외한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업종)	규모	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 1차금속 제조업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16.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17. 2~16호를 제외한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p>18. 농업, 임업 및 어업 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제외) 22. 도시철도 운송업 23. 도매 및 소매업 24. 숙박 및 음식점업 2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6. 방송업 27. 통신업</p>	<p>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p>	<p>2명 이상</p>	<p>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28. 부동산업 29. 연구개발업 3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1. 보건업 32. 골프장 운영업 33. 수리업 34. 세탁업 18. 농업, 임업 및 어업 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제외) 22. 도시철도 운송업 23. 도매 및 소매업 24. 숙박 및 음식점업 2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6. 방송업 27. 통신업 28. 부동산업 29. 연구개발업 3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1. 보건업 32. 골프장 운영업 33. 수리업 34. 세탁업</p>	<p>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p>	<p>1명 이상</p>	<p>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p>
<p>35. 건설업</p>	<p>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p>	<p>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p>	<p>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 ----- 한다 및 해당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 ----- 위하여 사업장-----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 향상시키기 위한 -----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제도----- -----.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 ----- --- 별표 1의2와 같다.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 별표 6의2-----.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삭 제>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삭 제>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② -----, -----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회의 등) ① ~ ③ (생략)	제25조의4(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생 략)	⑤(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삭 제>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2. ----- 별표 6의3-----
3.~5.(생 략)	3.~5.(현행과 같음)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 ----- 별표 6의4----- -----.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2. ----- 별표 6의5----- -----
가.·나.(생 략)	가.·나.(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협조 요청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52조의4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전문 생략)

4. 야간작업(1종)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작업을 1개월에 4회 이상(연 48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야간작업을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연 72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별표 13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야간작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야간작업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위장관계: 위내시경 ④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별표 14의2 제5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시행일) 이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99조의2, 별표 12의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9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9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9월 1일

제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후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관리수첩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강관리수첩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부담비용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후 실시한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송부에 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한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1월 1일 전에 제86조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공표한다.

제10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이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제99조의2, 별표 12의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